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제정 2021. 11. 5 조례 제17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별 관리 대상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①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